

산학협력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61-1번지 국민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홍보
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8.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적재산권의 수탁 관리
9. 본교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인력 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의 지원
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대학안에 설치·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11. 벤처기업의육성예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학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12. 산업기술단지지원예관한특별레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3. 그 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4. 지식·인력개발 관련 교육 및 훈련
15. 학술연구진흥을 위한 종합기획과 정책수립
16.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이사) 산학협력단에 이사 1인을 두며, 단장이 이사가 된다.

제6조(단장) ① 단장은 대학 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대학 총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학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7조(단장의 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감사) 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본 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대학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학협력운영위원회와 대학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으로 산학지원팀, 산학협력팀, 연구기획팀, 연구관리팀을 두며, 자문·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2015.12.28.개정>

②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① 단장은 제9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연구원, 직원 등의 채용)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 개방형전문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연구원 및 직원, 개방형전문직에 대한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직위 등의 계약조건은 따로 정한다.

③ 대학 총장은 대학 소속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단장은 연구원, 직원 및 개방형전문직으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대학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 3 장 산학협력운영위원회

제14조(구성) ① 산학협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총무처장, 기획처장, 국제교류처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대학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대학 총장이 임명한다. <2015.12.28.개정>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운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17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8조에 의한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제18조(수입) 다음 각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이자수입
6.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과 실험 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 6의2.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익금 <2015.12.28.신설>
- 6의3.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2015.12.28.신설>

7.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19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7의2.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2015.12.28.신설>
- 7의3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2015.12.28.신설>
8. 기타 산학협력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20조(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4.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21조(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한다.

- ②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 ③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22조(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학 총장과 협의하여 대학 회계 담당 부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지출방법)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 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24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5조(예·결산서 제출) 단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학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6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학협력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산학협력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제28조(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된다.

제29조(세부사항)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공고의 방법)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교내 학보 등에 공고한다.

제31조(자산가액 등재) 자산의 등재가액은 \300,000,000원으로 한다. 이 자산은 2007년 5월 31일 현재의 현금성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체결된 제4조에 의한 사업은 산학협력단에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7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8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직제개편에 따른 제9조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